

# 보도자료



보도 **2019.6.27(목) 조간** 배포 2019.6.26.(수)

L			
책 임 자	금융위 보험과장 하 주 식(02-2100-2964)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이 창 욱(02-3145-7460) 생보협회 보험범죄방지센터장 채 한 기(02-2262-6635)	담 당 자	윤 송 이 사무관 (02-2100-2945) 홍 영 호 팀장 (02-3145-7471) 김 희 경 팀장 (02-2262-6658) 박 상 조 팀장 (02-3702-8540) 김 지 훈 사무처장 (02-712-9112)

# 제 목 :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한이 강화됩니다.

-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발표[18.12.6]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
- ◆ 손해사정 위탁 및 선임 관련 기준을 보험협회에서 마련하는 근거를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신설[19.6.12 규정개정 및 시행]
- ② 보험협회 자율규제로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7월 중순)하고, 이행 여부를 사후에 관리·감독
- ❸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을 배포(7월 중순)
- ②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손해사정사 관련 정보의 공시 확대 및 손해사정사 역량 강화

## 1 보험권 손해사정 현황

- □ (적용범위)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대상"이므로,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질병·상해)이 대상 (보험업법§185)
  - 해당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손해사정 자격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자에 위탁하여야 함
- □ (운영형태) ① 보험회사 직접고용(고용손사) ② 보험회사 업무위탁 (위탁손사) ③ 보험계약자가 선임(독립손사)하는 형태로 운영
- □ (현황) 위탁 또는 독립손사는 일정한 영업기준을 갖춘 후 금감원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금융위(금감원) 감독 대상(보험업법§187, §192)

#### < 손해사정사 현황 >

(2018.12말 기준)

구분	보험회사	<b>손해사정업자</b> (1,241개)	합계
손해사정사	2,092명	3,495명	5,58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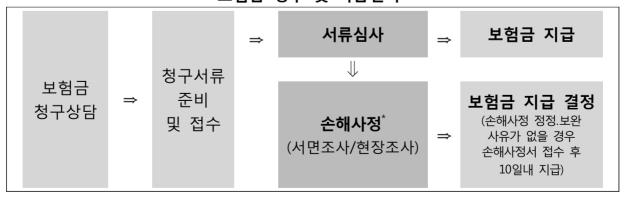
- □ (선임주체) 상법\* 등에 따라 손해사정은 보험사의 본질적 업무이나, 계약자가 원할 경우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 가능(비용부담은 별개)
  - \* 상법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 <u>보험자는</u>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중 략) <u>지급할</u> 보험금액을 정하고 (중 략)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상법 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 ② 제1항의 <u>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u> 부담으로 한다.
  - 다만, 계약자 본인 비용이 아닌 보험회사 비용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 및 일정기간(7일) 경과 등이 필요
    - 보험회사가 이미 수행한 사정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손해사정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계약자가 부담

###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	비용부담
① 손해사정 착수전 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선임의사를 통보하고 보험 회사가 동의를 한 경우	H싱싱IL
②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
③ 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를 승복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 등
④ 보험계약자 등이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포함계탁자 <del>등</del>

□ (업무처리 절차)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위해 청구서류 심사 및 손해액, 보험금 사정(평가) 수행

#### <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



※ 손해사정 수행 건은 전체 청구건수 대비 3% 이하(자동차보험 제외; 자동차의 경우 대물사고에 따른 현장출동 등으로 자동차 보험의 손해사정 비중은 25%이하) (18년 8월말 기준, 주요 생·손보사 4개사 기준)

## 2 추진경과

3

- □ 소비자 손해사정 선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TF<sup>\*</sup>를 운영('18.1~11월)하여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18.12.6)
  - \* 금융위, 금감원, 생·손보협회, 손해사정사회,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등
- □ 기존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의 후속작업을 위해 **손해사정 TF**를 계속 운영하여 구체적인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19.1월~)
  - 개선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19.6.12)

## 손해사정 관행 개선 후속조치 주요내용

- ① 보험협회에서 **손해사정 위탁** 및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모범규준)을 마련하도록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개정(19.6.12)
  - 보험협회는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불공정한 위탁** 수수료 지급 및 불합리한 손해액 또는 보험금 감액 산정을 방지하는 손해사정 업무 위탁 모범규준을 마련(감독규정 제9-20)
  - 또한 보험회사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 동의와 관련한 표준 동의기준을 마련(감독규정 제9-16)
  - ⇒ 보험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모범규준은 2020년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전에 시범 시행기간('19년 4분기 중)을 운영
- ② 보험협회 자율규제로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19.7월, 보험협회 홈페이지 공개)
  - ⇒ 보험회사는 시범 시행기간 이전에 해당 모범규준에 따라 내부 규정의 개정 및 업무절차 등을 정비하고, 시범 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오류사항 등을 보완하도록 할 예정

### <모범규준 주요내용>

- ① 보험회사는 위탁 손해사정사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평가 항목별 반영 비율의 배분이 적정해야 하되, 손해사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음
- ② 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운영하며, 동의 기준에 따라 선임 여부를 결정
- ③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 및 손해사정 선임 거부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그 사유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
- ④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 담보 중 정액 담보 보험금과 함께 청구되거나 청구서류 심사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도록 하며 별도의 완화된 동의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 ⑤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 동의기준, 선임 요청 건수, 선임 거절 건수 및 사유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보험협회 경영공시 시행세칙 개정)

### ③ 보험회사의 모범규준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마련한 **손해사정 위탁기준**이 **적정**하고,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는지 **감독**\*
  - \* 보험회사의 경영실태평가시 손해사정 관련 내용을 보험금 지급심사 적정성 부문의 비계량 평가항목으로 반영 등
- 보험회사 공시를 통해 **손해사정사 동의기준이 적정**하고, **선임** 거부건수 및 거부 사유가 적정한지 **사후적으로 감독**할 예정

## ④ 단독 실손의료보험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 마련

('19.7월, 한국손해사정사회 홈페이지 공개)

- 소비자 선임권을 시범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사정 업무 가이드로,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을 보험협회와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마련하여 배포
- 손해사정업무 위임계약, 손해사정 조사표, 손해사정서 정정·보완 답변서 등 구체적인 서식을 제공하여 손해사정 업무의 투명성 및 전문성 향상에 도모
- ⇒ 향후 다른 보험상품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

####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사정 업무매뉴얼 주요내용>

- ① 사전안내(보험회사): 청구서류 접수 완료 후 서류심사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손해사정 대상 건의 경우 손해사정 안내, 보험회사와 별도로 손해사정 업무 선임시 위탁 계약 체결
- ② 계약내용 확인 등: 손해사정사는 계약내용 및 청구내용 확인, 유의사항 점검 등
- ③ 피보험자 등 면담: 손해사정 취지 및 사유 설명, 발병 경위 등 확인, 동의서 징구 등
- ④ 병의원 등 관련기관 확인: 내원병원 확인 담당의사 면담, 경찰서 등 관련기관에서 기록 확인
- ⑤ 손해사정업무 지연시 절차: 손해사정 절차가 지연될 경우 지연사유 등을 안내
- ⑥ 손해사정서 작성: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8조(손해사정서 기재사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재
- ① 손해사정서 교부: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 작성을 완료한 후 보험회사 및 보험 계약자 등에게 교부하며, 보험회사는 정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
- ⑧ 보험금 최종 결정 및 안내(보험회사): 보험금 지급가능 여부 최종 확인 및 지급 내역 혹은 부지금·감액지급 설명 및 안내

## 5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정보 공시 확대 및 손해사정사 역량 강화

-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별도로 선임할 수 있고, 선임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서 보다 자세한 **안내문**을 제공\*
  - \* 현재 손해사정 비용 부담 원칙을 안내문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 소비자의 손해사정 직접 선임 절차,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시범 운영, 손해사정사 공시 정보 확인 등을 추가할 예정
- **한국손해사정사회**(이하 "손사회")에서 손해사정사 관련 공시 항목 및 범위를 확대할 예정
  - ※ 현재 손사회에서 손해사정 및 업체 관련 정보를 공시('19.1월 시행)하고 있으며, 공시항목은 전문인력 보유현황, 경영실적, 징계현황 수준
- 위탁 **손해사정업체**도 손사회를 통한 **공시**를 확대할 계획
- 손사회 및 보험연수원에서 손해사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손해사정사별 교육 이수시간을 손사회에 공시할 예정

## 향후 계획

- □ 후속조치 방안 발표 이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 시행시기 이전까지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
- ⇒ 향후 TF 논의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마련한 손해사정 개선방안은 '19년 하반기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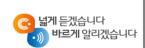
추진과제	시행시기(예정)
1.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	′19. 6. 12.~
2.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① 보험협회의 모범규준 발표	'19. 7월
② 모범규준의 시범 시행기간 운영	'19. 4분기~
3. 보험회사의 모범규준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① 보험회사의 위탁업체 선정기준의 합리성 검토	′20년~
②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동의기준, 거절사유 등의 적정성 검토	′20년~
4. 실손의료보험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 적용	
1 보험협회의 모범규준 발표	'19. 7월
② 모범규준의 시범 시행기간 운영	'19. 4분기~
5.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정보 공시 및 손해사정사 역량 강화	
① 보험회사의 안내문 제공	'19. 4분기~
② 손해사정 및 업체 관련 공시 강화	'19. 4분기~
③ 손해사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이수시간 공시	'19. 4분기~

<별첨 1> 손해사정 업무 진행절차</br>

<별첨 2> 손해사정 업무 및 관행 개선에 대한 오해와 진실 O&A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 손해사정 업무 진행절차

#### 손해사정 절차

보험사고 이후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보험회사의 청구서류 심사



손해사정 선임권 안내 (보험회사)



보험금 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행사 여부 확인(보험회사)



선임된 손해사정사의 보험회사에 선임 동의 요청



보험회사 동의 이후 선임 손해사정사와 보험금청구권자의 계약 체결



손해사정 수행



손해사정서 작성



손해사정서 교부



보험금 지급액 결정 및 안내 (보험회사)

#### 내용

- ·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관련 상담 가능
- · 청구서류 접수 이후 서류심사로 심사가 완료되는 경우 별도의 손해사정 없이 보험금 지급 완료
- · 손해사정 대상인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 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적극적 으로 안내
- ·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안내일 로부터 3영업일 내에 선임 관련 의사표시
- · 3영업일 이내 의사표시 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위탁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진행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손해사정 업무 착수
- ·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 선임 기준에 따라 동의 여부를 판단(3영업일 이내)
- ·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안내하고, 손해사정사의 재선임 요청(재선임은 5영업일 이내)
-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가 선임에 동의하지 않은 손해사정사를 통해 손해사정할 경우, 해당 비용은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계약자 등이 별도로 부담
- · 계약 체결시 보험금 청구권자와 손해사정사간의 권리·의무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
- · 보험계약 및 청구내용 확인
- · 피보험자 면담, 병·의원 등 관련기관 확인
-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8조(손해사정서 기재사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재
- · 손해사정서 작성을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보험 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게 교부
- ·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서 정정·보완 요청
- · 보험금이 정상 지급된 경우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산출근거, 비례분담 내역 등에 대해 설명 및 안내
- · 보험금 부지급 또는 감액 지급된 경우 사유 및 결과 등을 상세히 안내

## 손해사정 업무 및 관행 개선에 대한 오해와 진실 0&A

- 1. 납부한 보험료에 손해사정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든 손해 사정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 (오해) 상법 및 보험업법에서 손해사정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가 선임한 독립 손해사정사 비용도 회사가 부담해야 할 필요
- □ (진실) 상법 및 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바는,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시 회사가 지급 여부·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손해사정 비용을 소비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키지 않고 회사가 부담한다는 의미
  - 따라서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과는 **별개**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손해사정한 비용까지 회사가 부담하라는 의미가 아님
    - ※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에서는 ①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회사에게 손해 사정사의 선임의사 동의를 얻은 때, ②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사고 통보(접수가 완료된 날)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손해사정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보험업법 감독규정 9-16조 2항)
  - 2. '손해사정'을 하게 되면 소비자는 더 이상 불복하지 못하고 무조건 수용해야만 하는지?
- □ (오해) 손해사정은 객관적인 절차로 손해사정 결과를 소비자가 무조건 수용해야 하므로, 손해사정 단계에서 반드시 정정할 필요
- □ (진실)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액 산정을 위한 절차일 뿐이며, 소비자가 손해사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민원제기, 분쟁조정\*, 소송\*\*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사후구제 가능
  - \* 금융소비자 등이 금융관련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 조정신청을 받아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 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자주적인 분쟁해결방식
  - \*\* 보험회사와 소비자간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금융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소비자에 대한 소송지원이 가능

- 3.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없는지?
- □ (오해)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손해사정을 위탁하는 것은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므로 금지될 필요
- □ (진실) 보험회사의 경우 손해사정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자회사 설립 후 손해사정 업무 위탁 中
  -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는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하여 **손해** 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외부 업체에 위탁(보험업법 §185)
    - ※ 손해사정은 보험업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금융위(금감원) 신고로 자회사로 설립이 가능하며(보험업법 §115①), 손해사정업무의 자회사 위탁을 불공정한 손해사정업무 행위 유형에서 제외(영 §99③ 3호)
  - 보험회사의 100% 자회사 형태인 손해사정법인에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통상적인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비판 하는 것은 불합리
    - \* 대기업 집단에서 계열사끼리 내부거래를 하고, 그 거래의 직·간접적인 이익이 대기업 총수 일가에게 흘러가는 현상(총수일가 소유의 자회사에 일감(이익)집중)
- □ 자회사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 위탁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 보험회사의 비용증가에 따른 **보험료 상승** 등으로 이어져 선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 이번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업무 위탁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자회사 포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손해사정 업무 위탁의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ul> <li>□ (오해) 단독 실손의료보험 이외의 보험상품은 손해사정사 별도 선임이 불가능</li> <li>□ (진실) 단독 실손의료보험 이외의 다른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이 막혀있는 것은 아님</li> <li>○ 다만,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착수 이전에 보험회사 동의를 얻은 때에는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보험회사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비용으로 손해사정이 가능 (보험업법 감독규정 9·16조 2항)</li> <li>□ 금번 단독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 선임권 시범 시행에서 발견된 개선 요구사항을 보완하고, 향후 다른 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임권도 단계적으로 확대한 계획</li> <li>5. 소비자 선임권 확대 운영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외부 손해 사정에 대한 보수를 너무 낮게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손해사정사 선임이 어려운 것 아닌지?</li> <li>□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른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손해사정 당의 세부기준을 운영할 계획으로,</li> <li>○ 모범규준에 따라 손해사정 당의도 등 실제 손해사정업무 수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보수를 결정</li> <li>※ 각 보험회사는 모범규준에 단독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손해사정 선임동의기를 보다 더 완화된 별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li> <li>⇒ 금융당국은 보험협회 공시를 통해 손해사정사 동의기준, 선약 거부건수 및 거부 사유가 적정한지 사후적으로 감독할 예정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시 비계량 항목으로 반영)</li> <li>□ 다만, 보험회사가 과도한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선임권을 행사하지 않은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충분히 협의가 필요</li> </ul>	멸노의 존애사정사 선임이 불가능한 것인시?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이 막혀있는 것은 아님  ○ 다만,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착수 이전에 보험회사동의를 얻은 때에는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보험회사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비용으로 손해사정이 가능(보험업법 감독규정 9·16조 2항)  □ 금번 단독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 선임권 시범 시행에서 발견된 개선 요구사항을 보완하고, 향후 다른 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임권도 단계적으로 확대한 계획  5. 소비자 선임권 확대 운영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외부 손해 사정에 대한 보수를 너무 낮게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손해사정사 선임이 어려운 것 아닌지?  □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른 손해사정 동의 세부기준을 운영한 계획으로,  ○ 모범규준에 따라 손해사정 당의 세부기준을 운영한 계획으로,  ○ 모범규준에 따라 손해사정 난이도 등 실제 손해사정업무 수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보수를 결정  ※ 각 보험회사는 모범규준에 단독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손해사정 선임동의기를 보다 더 완화된 별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 금융당국은 보험협회 공시를 통해 손해사정사 동의기준, 선임거부건수 및 거부 사유가 적정한지 사후적으로 감독할 예정(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시 비계량 항목으로 반영)  □ 다만, 보험회사가 과도한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선임권을 행사하지 않은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 (오해) 단독 실손의료보험 이외의 보험상품은 손해사정사 별도 선임이 불가
동의를 얻은 때에는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보험회사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비용으로 손해사정이 가능 (보험업법 감독규정 9·16조 2항)  □ 금번 단독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 선임권 시범 시행에서 발견된 개선 요구사항을 보완하고, 향후 다른 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임권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5. 소비자 선임권 확대 운영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외부 손해 사정에 대한 보수를 너무 낮게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손해사정사 선임이 어려운 것 아닌지?  □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른 손해사정 당의 세부기준을 운영할 계획으로,  ○ 모범규준에 따라 손해사정 당의 세부기준을 운영할 계획으로,  ○ 모범규준에 따라 손해사정 난이도 등 실제 손해사정업무 수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보수를 결정  ※ 각 보험회사는 모범규준에 단독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손해사정 선임동의기를 보다 더 완화된 별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 금융당국은 보험협회 공시를 통해 손해사정사 동의기준, 선임 거부건수 및 거부 사유가 적정한지 사후적으로 감독할 예정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시 비계량 항목으로 반영)  □ 다만, 보험회사가 과도한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선임권을 행사하지 않은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발견된 개선 요구사항을 보완하고, 향후 다른 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임권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5. 소비자 선임권 확대 운영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외부 손해 사정에 대한 보수를 너무 낮게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손해사정사 선임이 어려운 것 아닌지?  □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른 손해사정 동의 세부기준을 운영할 계획으로,  ○ 모범규준에 따라 손해사정 난이도 등 실제 손해사정업무 수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보수를 결정  ※ 각 보험회사는 모범규준에 단독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손해사정 선임동의기를 보다 더 완화된 별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 금융당국은 보험협회 공시를 통해 손해사정사 동의기준, 선임 거부건수 및 거부 사유가 적정한지 사후적으로 감독할 예정(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시 비계량 항목으로 반영)  □ 다만, 보험회사가 과도한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선임권을 행사하지 않은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동의를 얻은 때에는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보험회사와 별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비용으로 손해사정이 가
** 사정에 대한 보수를 너무 낮게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손해사정사 선임이 어려운 것 아닌지?  □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른 손해사정 동의 세부기준을 운영할 계획으로,  ○ 모범규준에 따라 손해사정 난이도 등 실제 손해사정업무 수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보수를 결정  ** 각 보험회사는 모범규준에 단독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손해사정 선임동의기를 보다 더 완화된 별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 금융당국은 보험협회 공시를 통해 손해사정사 동의기준, 선임 거부건수 및 거부 사유가 적정한지 사후적으로 감독할 예정(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시 비계량 항목으로 반영)  □ 다만, 보험회사가 과도한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선임권을 행사하지 않은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발견된 <b>개선 요구사항</b> 을 <b>보완</b> 하고, 향후 다른 보험 상품에 대
<ul> <li>모범규준"에 따른 손해사정 동의 세부기준을 운영할 계획으로,</li> <li>○ 모범규준에 따라 손해사정 난이도 등 실제 손해사정업무 수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보수를 결정</li> <li>※ 각 보험회사는 모범규준에 단독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손해사정 선임동의기를 보다 더 완화된 별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li> <li>⇒ 금융당국은 보험협회 공시를 통해 손해사정사 동의기준, 선임 거부건수 및 거부 사유가 적정한지 사후적으로 감독할 예정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시 비계량 항목으로 반영)</li> <li>□ 다만, 보험회사가 과도한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선임권을 행사하지 않은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li> </ul>	5. 소비자 선임권 확대 운영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외부 손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보수를 결정  ※ 각 보험회사는 모범규준에 단독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손해사정 선임동의기를 보다 더 완화된 별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 금융당국은 보험협회 공시를 통해 손해사정사 동의기준, 선임 거부건수 및 거부 사유가 적정한지 사후적으로 감독할 예정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시 비계량 항목으로 반영)  □ 다만, 보험회사가 과도한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선임권을 행사하지 않은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사정에 대한 보수를 너무 낮게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손해사정시
보다 더 완화된 별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 금융당국은 보험협회 공시를 통해 손해사정사 동의기준, 선임 거부건수 및 거부 사유가 적정한지 사후적으로 감독할 예정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시 비계량 항목으로 반영)  □ 다만, 보험회사가 과도한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선임권을 행사하지 않은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사정에 대한 보수를 너무 낮게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손해사정시 선임이 어려운 것 아닌지? 그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
<ul> <li>거부건수 및 거부 사유가 적정한지 사후적으로 감독할 예정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시 비계량 항목으로 반영)</li> <li>□ 다만, 보험회사가 과도한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선임권을 행사하지 않은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li> </ul>	사정에 대한 보수를 너무 낮게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손해사정사 선임이 어려운 것 아닌지?  □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 모범규준"에 따른 손해사정 동의 세부기준을 운영할 계획으로, ○ 모범규준에 따라 손해사정 난이도 등 실제 손해사정업무 수
결과적으로 선임권을 행사하지 않은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사정에 대한 보수를 너무 낮게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손해사정시 선임이 어려운 것 아닌지?  □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 모범규준"에 따른 손해사정 동의 세부기준을 운영할 계획으로,  ○ 모범규준에 따라 손해사정 난이도 등 실제 손해사정업무 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보수를 결정 ※ 각 보험회사는 모범규준에 단독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손해사정 선임동의기
	** 사정에 대한 보수를 너무 낮게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손해사정사 선임이 어려운 것 아닌지?  □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모범규준"에 따른 손해사정 동의 세부기준을 운영할 계획으로,  ○ 모범규준에 따라 손해사정 난이도 등 실제 손해사정업무 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보수를 결정  ※ 각보험회사는 모범규준에 단독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손해사정 선임동의기보다 더 완화된 별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 금융당국은 보험협회 공시를 통해 손해사정사 동의기준, 선거부건수 및 거부 사유가 적정한지 사후적으로 감독할 예

4. 소비자는 단독 실손의료보험 이외의 다른 보험상품의 경우